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8
----------	-------

제출년월일 : 2014. 10. 1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 사유

경조사 휴가 대상 확대 및 휴가 일수 조정, 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경조사 휴가 대상 확대 및 휴가 일수 조정(안 제24조제1항 별표)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신설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3일 확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신설

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및 분할 사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4조제2항)

- 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사항**

- 가. 입법예고 : 2014. 9. 18 ~ 2014. 10. 8(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4. 10. 14)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유산”으로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공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p> <p>6. ~ 9. (생략)</p> <p>제24조(특별휴가) ① (생략)</p> <p>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3조(공가)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건강검진-----</p> <p>6. ~ 9. (현행과 같음)</p> <p>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p>

③ ~ ⑨ (생략)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  
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6. (생략)

⑪ ~ ⑬ (생략)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  
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  
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  
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  
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 유산--  
-----  
-----  
-----

1. ~ 6. (현행과 같음)

⑪ ~ ⑬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붙임 : 경조사휴가 일수표 1부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2호에 해당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경조사 휴가 대상 및 휴가 일수 확대, 한 번에 두명 이상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및 분할사용 건으로 조례 개정애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총무과 이재선
연 락 처	02-3153-8212